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8.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8월 12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8.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시책 개발 및 지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영등포구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노동”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로 정의하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포괄적 권리보장을 담보하고자 함.
- 안 제6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에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안 제8조(점검 및 평가)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각 계획에 대해 환류시키는 절차를 마련함.
- 안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부터 ~ 안 제12조(법률 지원 등)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노동 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영등포구를 만들고자 하는 선언적, 권고적 형태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보임.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계획 수립 ▲ 노동자 권리보호·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에 해당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입법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 한편, 우리 구(區)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각각의 조례는 “감정노동 종사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이 직업군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는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2
----------	-----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김지연·유승용·박현우

이규선·신흥식 의원(5인)

## 1. 제안이유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라. 시책 개발 및 지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8. 6. ~ 8. 11.):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2. 노동환경 개선 사업
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5.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6. 노동권익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 지원 등) 구청장은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